

인천지방법원 2015. 5. 13 선고 2014가합11839 판결 [토지인도 및 건물철거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피고C

변론 종결2015. 4. 22.

판결 선고2015. 5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가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원고 A은 767.7분의 138.9의, 원고 B은 767.7분의 628.8의 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이다.

나. 원고 B은 원고 A의 동의를 얻어 2013. 5. 3.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, 임대차기간 2013.

6.말부터 2018. 9.말까지, 보증금 50,000,000원, 차임 2015. 5. 2.까지는 6,000,000원, 2018.

9.말까지는 7,000,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(이하 '이 사건 임대차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다. 피고는 2013. 7. 23.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원고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을 완공하였다.

라.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들에게 보증금만을 지급한 채 2014. 9.초까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, 원고들은 2014. 9. 22. 피고에게 피고의 위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해지통고서를 발송하였다.

마.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재판장판사권희

판사홍윤하

판사정순열

별지